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1-02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누5215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redacted]공동체
피고, 피항소인	[redacted]군수
제1심판결	[redacted]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구합71735 판결
변론종결	2018. 8. 29.
판결선고	2018. 10.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218,250원, 지방교육세 335,940원, 농어촌특별세 241,030원의 부과처분 및 취득세 1,828,050원, 지방교육세 145,420원, 농어촌특별세 104,4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1-02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별지 포함)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배기열

판사 박재우

판사 박해빈